

## 4.4.7 교원연수규정

제정 2003. 07. 09.  
개정 2013. 08. 26.  
개정 2022. 04. 04.  
개정 2022. 10. 04.  
개정 2023. 02. 0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이 국제 학술교류를 통하여 학문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다 심오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·외 연수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수기간) ① 연수는 기간에 따라 1년일 경우에는 장기연수(교원연구년제)로,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기연수로 구분한다. <개정 2013. 8. 26, 2022.10.04.>

② 단기연수자가 연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연장기간은 최초 승인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기간 종료일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22.10.04.>

③ 불가피한 사유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.

제3조(신청) 연수 신청자는 소속 학과(부)장의 추천을 받아 연수 신청서 <별지 제1호 서식>, 연수 계획서 <별지 제2호 서식>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조(신분) ① 연수자는 연수기간 동안 본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.

② 연수 기간은 재직년수에 산입하며 승진 및 승급도 계속 시행한다.

제5조(지원) ① 연수기간 동안 본봉을 지원한다.

② 학술연구비는 연수목적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.

제6조(자격 및 제한) 연수 지원신청자는 본교에 전임교원으로 5년이상 근무하고 조교수 이상인 교원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23.02.02.>

1. 신청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연수를 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<항호 변경 2023.02.02.>
2. 신청기준일 현재 정년까지 잔여 근무일수가 3년 미만인 자 <항호 변경 2023.02.02.>
3. 신청기준일 현재 각종 연수결과 보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자 <항호 변경 2023.02.02.>
4. 신청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자 <항호 변경 2023.02.02.>
5.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 <신설 2023.02.02.>

제7조(어학능력) 장기연수 지원 신청자는 파견국에서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어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.

제8조(연수대상자 선발) ① 연수 교원의 수는 전체 전임교원수의 1/10 이내로 하고, 당해년도 연수교원의 수는 본 대학교 사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08.26, 2022.04.04.>

② 소속학과(부) 연수 교원의 수는 1/4를 초과 할 수 없다. 다만, 소속학과(부) 교원의 수가 4인 이하인 경우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3.08.26, 2022.04.04.>

③ 연수대상자 선발은 본교 근무년수, 최근 3년 간 업적평가 평균점수, 연수계획 서 등을 고려하여 연수자 선발 배점표<표,1>를 작성하고 배점표 80점 이상인 대상자를 연수자의 3배수 추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발한다. <개정 2013.08.26., 2022.04.04., 2023.02.02.>

제9조(연수기관) 연수 기관은 학문수준이 높고 연구시설이 잘 갖추어져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내외 교육기관

또는 연구기관이어야 한다.

제10조(연수계획의 변경) 연수자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(각종 복무상황 보고) 해외 연수자는 출입국 상황(일시귀국 및 재출국 포함)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근무의무) ① 연수자는 약정된 연구기간 종료 후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.

② 연수자는 복귀 후 연수기간의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하여야 한다

③ 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의 보수 전액에 대해 의무복무기간의 잔여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.

④ 연수 교원은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보고서 <별지 제3호 서식>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이 결과를 2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연수 및 향후 5년간 교내 연구비 신청자격을 상실한다. 단,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학술지 게재의무를 면제한다.

제13조(휴직과의 관계) 연수 자격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휴직기간은 근무년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.

제14조(세부사항) 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2. (교수연구년제규정 폐지) 교수연구년제규정은 교원연수규정과 내용이 동일하여 폐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<표1> 연수자 선발 배점표 <개정 2022.04.04.>

연수 신청자		소속 :	직위 :	성명 :
구 분	점수	배 점		비 고
본교 근무년수	( 점)	10년 이상 : 30점 8 ~ 9년 : 25점 6 ~ 7년 : 20점 5년 : 15점		최초 임용일로부터 연수신청 일까지 산정, 단, 2회 이상 연수자는 직전 연수종료일부터 산정(총30점)
업적평가	교육( 점) 연구( 점) 봉사( 점) 소계( 점)	91 ~ 100% : 10점 81 ~ 90% : 9점 71 ~ 80% : 8점 61 ~ 70% : 7점 51 ~ 60% : 6점 0 ~ 50% : 5점		최근 3년간 교육연구봉사 점수를 평균하여 각 분야의 점수를 합산(총30점)
연구계획	( 점)	40점		연수계획서와 본교 기여도를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평가(총40점)
총 계	( 점)	100점		

년 월 일

평가위원 : \_\_\_\_\_ 인



연수 계획서

1. 연수과제명	(한글)
	(영문)
2. 연수희망기간	년 월 일 ( 월 일간) 년 월 일
3. 연 수 기 관	가. 기 관 명 : 나. 초청자 성명 : 다. 초청자 주소 :
4. 연수의 목적	
5. 연구계획	
6. 기대효과	



## 〈연수 결과보고서〉

\* A4 용지 5페이지 이내

1. 연수 과제명(영문 포함)

2. 연수 일정

(연수기간동안의 연수추진 내용을 주요 일정별로 기재함)

3. 연수 활동

(연수결과의 개요, 연수기관의 학문업적 및 연구개발 현황과 동향, 연수시 주요 접촉인사 및 기타 활동사항 등 기재)

4. 앞으로의 연구계획

(연수를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공동연구나 연구의 지속적인 협력가능성에 관한 내용 또는 연수결과 활용방안 등)

5. 기타

(기타 본교와 관련된 참고사항이나 건의사항)